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방법 및 규정 안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생 휴가 신청 및 처리 메뉴 개발 완료에 따라 학생 휴가 신청 방법 및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매뉴얼을 숙지하신 후 학생 휴가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신청대상) 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

(신청 가능 범위) 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신청 및 마감기한) 건별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설정·운영

(유의사항) 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

I

학생 휴가 개요

☐ (근거 규정)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휴가 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 (승인 권자) 학생 소속 대학장

☐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간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II

학생 휴가 구분

□ (병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출산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0.06.)

□ (공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Ⅲ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가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가 신청

1. 신청경로: 학생 정보 - 수강정보 - 휴가처리
2.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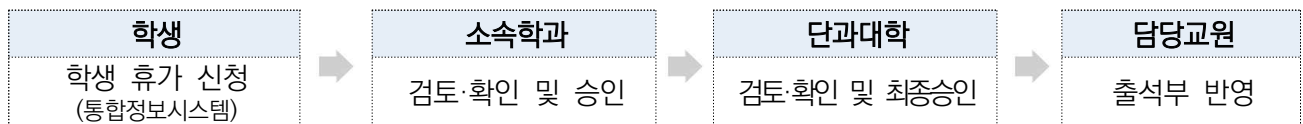
□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 (승인 절차) 학생 → 학과 → 대학



□ (증빙 서류) 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

구분	증빙서류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관련 공문 등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IV

학생 휴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V

안내 사항

- 학생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회학과 이메일 및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휴가 사유 발생 시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도 반드시 연락드리기 바랍니다.
- 사회학과 이메일: pje0408@cnu.ac.kr (📧 클릭)

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시행 2022. 10. 6.] [충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70호, 2022. 10. 6., 일부개정.]



충남대학교, 042821613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조명 개정 2019. 6. 26.)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6.)

제3조 삭제(2014. 8. 28.)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8. 개정2019. 6. 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4. 8. 28. 개정 2019. 6. 26.)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6. 26.)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9. 6. 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6. 26.)

부칙 <제2070호, 2022. 10.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10. 21., 2022.10.06.>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2

학생 휴가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예시	출결 현황(단위: 시간)				기준 충족 여부		성적평가 대상
	학생 휴가 (a)	출석 (b)	결석 (c)	계 (d=a+b+c)	2/3 이상 출석(b) [기준: 30시간]	출석시수(b)와 학생휴가 수업시수(a)의 합이 3/4 이상 [기준: 33.75시간]	
1	15	30	0	45	충족	충족	대상
2	15	28	2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3	15	19	11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4	14	29	2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5	10	30	5	45	충족	충족	대상
6	4	30	11	45	충족	충족	대상
7	4	29	12	45	미충족	미충족	비대상(F학점)

※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평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 충남대학교 학생회가 규정, 제2조 4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특별서류) : 가족관계증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
명서, 사망장지 등

